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WS	A 3-6
	91

한국산업사회연구회 1995년 전기 학술대회 자료집

Ma.d. 4

38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운동

일시 : 1995년 4월 22일(토) 늦은 1시 - 늦은 5시 50분

장소 : 연세대학교 장기원 기념관

한국산업사회연구회(720-4725, 735-1208(팩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설 동 훈 (서울대학교 강사, 사회학)

1. 머리말

네팔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이 199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명동성당에서 그들이 취업했던 사업체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인력송출업체의 중간착취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인 것이 큰 사회적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또 산업체해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1994년 1월부터 한 달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치료 및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주요 세력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1994년 성수대교 교각 붕괴 사건 때 필리핀 출신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명단에 외국인이 자주 포함되곤 하였다. 이러한 일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쉽게 발견된다는 말이다. 이는 그들이 그만큼 우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싱가포르·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주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취업이라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느 정도나마 선진화 되어 산업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말해 준다. 그리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이 있었다. 그 여파로 앞으로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 산업체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 주는 '숨은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산업기술 연수생'이든 체류자격 자체가 적법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이든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노동자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징용 노동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이동 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동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실태를 실증조사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노동정책연구소와 한국산업사회연구회가 각각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표본조사자료이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외국인들인 관계로 내국인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원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원들은 한국어나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 곳곳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본추출은 사실상 비례적인 확률 표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신국적별로 할당(quota sampling)을 주었고, 그 후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종 조사대상자 선정은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한 사람의 외국인노동자를 면접한 경우 그로부터 다른 피면접자를 계속 소개받는 방법이다. 조사시기는 1994년 11월부터 1995년 2월까지의 4개월간이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 수는 393부이다.

3.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성격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75,863명인데, 그 중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28,328명(37.3%)이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47,535명(62.7%)이다. 즉 불법체류자가 산업연수생의 약 1.7배 정도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파키스탄 등의 순이다(표 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외국인노동자는 체류자격별로는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자로 구분되고, 민족별로는 한국계 동포 외국인과 비한국계 외국인으로 구분된다(표 2). 먼저, '민족'의 축으로 살펴보면,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해외 동포는 주로 중국 출신이므로 중국 교포와 기타 외국인의 두 범주로 압축할 수 있다. 중국 교포의 국적은 명백히 '중국'이므로 외국인이 분명하고, 단지 민족만이 '조선족'일 따름이다.

<표 1>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 1994년 12월 31일

(단위: 명)

구분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기타	전체
산업기술연수생 ('94년 연수생)	12,663 (7,528)	5,050 (2,639)	- (1,521)	- (767)	- (617)	1,310 (935)	1,585 (930)	403 (0)	7,317 (3,560)	28,328 (18,497)
불법체류자	18,676	7,538	5,256	2,087	2,277	-	-	-	11,701	47,535
계	31,339	12,588	-	-	-	-	-	-	19,018	75,863

주: 1994년 제1차 산업기술 연수생 중 기타는 베트남(2523), 미얀마(788), 이란(249)의 합임.
-는 미확인 자료.
자료: 법무부, 1995.

<표 2>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개념적 분류

체류자격	민족	
	중국 교포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I	II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III	IV

<표 3> 국적

국적	빈도	백분율
네팔	112	28.5
중국	105	26.7
필리핀	84	21.4
방글라데시	40	10.2
미얀마	18	4.6
파키스탄	11	2.8
인도네시아	5	1.3
나이지리아	4	1.0
이란	3	0.8
인도	3	0.8
스리랑카	3	0.8
기타 아프리카 나라	2	0.5
베트남	2	0.5
가나	1	0.3
	393	100.0

그러나 본 조사에서 표집된 조사대상자의 국적은 네팔이 1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 교포가 105명, 필리핀이 84명, 방글라데시가 40명의 순이다(표 3). 또 법적 체류자격별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325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68명이 표집되었다(표 4, 표 5). 이러한 표집결과는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출신국가별·체류자격별 분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과정 및 국내 생활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런데, 중국 교포 산업기술 연수생은 한 명밖에 표집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표 2>에 제시한 외국인노동자의 개념분류 중 III과 IV를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중국교포 불법체류자 104명,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 221명, 산업기술 연수생 68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4> 현재 출입국관리법 상의 지위

출입국관리법 상의 지위	빈도	백분율
관광·방문 사증, 체류기간 이내	54	13.7
관광·방문 사증, 체류기간 초과	249	63.4
연수 사증, 산업체 근무	68	17.3
연수 사증, 체류 기간 초과	22	5.6
	393	100.0

<표 5> 체류자격

법적 체류자격	빈도	백분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325	82.7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68	17.3
	393	100.0

<표 6> 민족 및 법적체류자격

민족·법적 체류자격	빈도	백분율
중국교포 불법체류자	104	26.5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	221	56.2
산업기술연수생	68	17.3
	393	100.0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7, 표 8). 성별로는 중국 교포와 필리핀 출신의 경우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중국 교포를 제외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보다 여성 비율이 높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 교포 불법체류자 집단이다. 반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취업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회교 율법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면에서는 중국 교포들은 40세를 초과하는 중년층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기타 외국인들은 20대 후반의 청년층이다. 또 불법체류자들의 평균 연령이 산업기술 연수생들보다 높다.

연령은 혼인 상태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진다. 기혼자 비율의 면에서 중국 교포들은 81.0%가 기혼자이고, 기타 외국인들은 약 30~40%만 기혼자이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에 비하여 연수생들은 미혼자 비율이 훨씬 높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교육년수는 10년 내외로 대략 고등학교 정도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인들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민족 및 체류자격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중국 교포나 기타 외국인, 그리고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의 학력 격차는 없는 것이다.

이들의 본국에서의 식구 수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교포는 4.5명으로 가장 적다. 체류자격별로는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식구 수가 7.2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연수생은 6.6명이다. 중국 교포들의 식구 수가 적은 것은 중국에서의 강제적인 가족계획 정책 추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국에서의 거주지역 규모는 중국 교포는 도시 출신이 훨씬 많은 데 비해, 기타 외국인들은 오히려 농촌 출신이 더 많다. 한편, 출생지와 거주지를 비교해 볼 때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를 한 경험이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을 위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출신은 58.1%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그렇다”고 대답한 중국 교포들은 33.1%에 불과하다.

“본국에서 취업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80% 이상이 취업하고 있었다고 응답한다. 본국에서 실업자로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필리핀 등이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제3국을 경유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양 갈래로 나뉜다. 중국 교포와 필리핀인들은 90% 이상이 곧장 입국하였지만,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인들은 약 50~70%가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한국에 유입된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 사람들의 60~70%는 이미 과거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또한 꽤 많은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인들은 제3국에서 취업한 경험도 있다.

<표 7> 출신국별 기본적 특성

구분	중국 교포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기타	전체
남자 비율*** (%)	60.0	57.1	100.0	83.9	91.9	74.6
평균 연령*** (세)	43.4	30.8	29.2	27.8	28.6	32.9
기혼자 비율*** (%)	81.0	47.5	27.5	39.3	29.7	49.9
교육년수** (년)	10.6	12.1	10.1	9.6	12.2	10.7
식구 수*** (명)	4.5	6.9	8.4	6.9	6.3	6.4
본국 거주지: 도시*** (%)	75.2	45.5	36.7	45.5	73.5	55.0
본국 출생지: 도시*** (%)	46.4	36.4	34.0	37.8	78.8	42.9
본국 실업자 비율** (%)	17.5	19.2	26.1	23.1	11.4	20.2
이농 경험률*** (%)	33.8	51.6	58.1	50.0	25.0	44.6
제3국 경유율*** (%)	2.9	8.9	72.0	50.0	37.8	30.4
해외여행 경험률*** (%)	11.8	30.3	66.7	59.1	41.9	40.9
제3국 취업률 (%)*	5.6	17.7	12.2	21.5	11.4	14.4
제3국 취업계획률*** (%)	16.7	60.0	28.0	32.1	30.0	33.7
평균 입국비용*** (US\$)	1417.4	1807.9	2619.7	1759.7	1790.4	1834.8
조사대상자 수(N)	105	84	51	112	37	393

* p<.05 ** p<.01 *** p<.001

<표 8> 민족 및 체류자격별 기본적 특성

구분	중국 교포 불법	기타 외국 불법	산업 기술 연수	전체
남자 비율*** (%)	59.6	86.9	58.8	74.8
평균 연령*** (세)	43.42	29.78	27.00	32.91
기혼자 비율*** (%)	80.8	41.6	28.8	49.9
교육년수** (년)	10.58	10.58	11.56	10.75
식구 수*** (명)	4.46	7.21	6.64	6.38
본국 거주지: 도시*** (%)	75.0	43.7	64.5	55.5
본국 출생지: 도시 (%)	46.9	39.3	50.0	43.0
본국 실업자 비율 (%)	17.7	21.3	18.3	19.9
이농 경험률* (%)	32.9	48.7	49.2	45.0
제3국 경유율*** (%)	3.0	48.8	12.5	30.6
해외여행 경험률*** (%)	11.9	56.9	25.4	41.0
제3국 취업률 (%)	5.6	18.5	12.5	14.3
제3국 취업계획률*** (%)	15.7	36.4	53.2	34.2
평균 입국비용** (US\$)	1147.36	2005.52	1591.21	1835.16
조사대상자수(N)	104	221	68	393

* p<.05 ** p<.01 *** p<.001

한편, 꽤 많은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60.0%)은 한국을 떠나 제3국에 취업하려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경우 불법취업자들보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취업하려 가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53.2%로 매우 높다.

한국에 오기까지 소요된 비용은 미국 돈으로 대략 1835달러 정도인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인의 입국비용이 가장 많고, 중국 교포들의 입국비용이 가장 적다.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취업비용이 가장 많고, 다음이 연수생이다.

본국에서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사회계층은 중간계층(53.6%), 노동계층(25.9%), 중상계층(12.0%), 하층계층(5.1%), 상층계층(3.5%)의 순이다. 가족의 경제적 상태도 평균 정도가 60.1%로 가장 많고, 평균 이상이 15.5%, 평균 이하가 24.5%이다.

4.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노동자는 상호 판이한 국내 유입 경로를 갖고 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과 계약한 각국의 송출업체를 통하여, 혹은 현지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통하여 유입된다. 각국의 송출업체는 연수생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에서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인력 송출업체에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일부의 매우 높은 수수료는 한국에서의 직장 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업기술 연수생들은 단체로 입국하여 몇 일간에 걸쳐 한국에 대한 소개 및 교육을 받은 후 각 사업체로 배치되어 일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관광 내지 단기 방문 사증을 갖고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연수 사증을 받고 입국한 후 직장을 이탈한 경우, 그리고 취업관련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 법적 허용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로 되는 경로'는 외국인 취업의 '연결망'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본국을 출발하여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 교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친지를 통하여거나 혹은 먼저 들어가서 취업 중인 친구의 연락과 소개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들은 대부분 '브로커'(broker)로 불리는 인력 송출업자, 취업 알선업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표 9>에는 체류자격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해외취업 알선업자를 활용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9> 해외취업 알선업자 활용 여부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활용하였다	24.1	27.1	59.7	32.2
활용하지 않았다	75.9	72.9	40.3	67.8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79	210	62	351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26.30757	2	.00000	

<표 10>과 <표 11>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해외취업을 결정하고 대상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돈을 벌고”(87.3%),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63.9%),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51.6%) 해외 취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돈을 벌기 위한 동기”가 가장 부각되는 집단은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이고,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국 교포는 “친척·친지 방문”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높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을 선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60.8%), “한국에 친근감이 가기 때문에”(39.2%), “입금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38.4%), “입국 사증을 받기가 비교적 쉬우므로”(31.1%)의 순으로 많다. 산업연수생과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한국을 해외 취업지로 선택한 이유로 “취업의 용이함”을 주로 지적하지만, 중국 교포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인 친구·친지 때문” 내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많이 언급한다. 또한 연수생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한국 입국 사증 발급의 유용성을 강조하지만, 중국 교포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사증 발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이웃 사람”(52.3%)에게서 주로 얻었으며, 또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50.0%) 및 “언론 매체의 뉴스 혹은 보도기사”(49.4%)를 통하여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과는 달리 산업기술연수생들은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이웃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비율이 매우 낮고 대신에, “본국 언론 매체의 뉴스”,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 및 “본국 정부의 홍보”를 많이 지적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주요 통로는 친척·친지(70.5%), 이웃사람(53.3%), 직장동료(38.9%) 및 언론매체(35.5%) 등이다. 체류자 격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다만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직장동료가 가장 주된 통로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10> 해외취업과 한국 선택 이유: 세 가지 합산

구분	응답 내용	%
해외취업 선택이유 (N=366)	① 돈을 벌기 위하여	87.3
	②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하여	63.9
	③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51.6
	④ 본국에서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취업을 위하여	22.1
	⑤ 한층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위하여	21.9
	⑥ 친척·친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10.1
	⑦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6.0
	⑧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었다	4.6
한국 선택이유 (N=357)	①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60.8
	② 한국에 친근감이 가기 때문에	39.2
	③ 임금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38.4
	④ 입국 사증을 발급 받기가 비교적 쉬우므로	31.1
	⑤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친척·친지의 소개 때문에	26.3
	⑥ 한국인 친척·친지의 초청 때문에	24.6
	⑦ 입국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므로	15.7
	⑧ 체포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13.7
	⑨ 미국이나 일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7.0
한국 정보 원천 (N=346)	①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이웃 사람	52.3
	② 올림픽게임·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	50.0
	③ 언론 매체의 뉴스 혹은 보도 기사	49.4
	④ 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직원	29.2
	⑤ 영화, 텔레비전의 연예·오락물	22.5
	⑥ 상품 광고	20.5
	⑦ 한국산 상품	14.5
	⑧ 본국 정부의 홍보	10.7
	⑨ 한국 정부의 홍보	5.8
한국취업 정보원천 (N=332)	① 친척·친지	70.5
	② 이웃 사람	53.3
	③ 직장(회사·공장·농장) 동료	38.9
	④ 언론 매체	35.5
	⑤ 학교 친구	16.6
	⑤ 교과서 이외의 책	16.6
	⑦ 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12.0
	⑧ 학교 교과서	4.8

주: 세 가지 복수 선택.

<표 11> 해외취업과 한국 선택 이유: 첫째

(가) 해외 취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돈을 벌기 위하여	58.9	79.8	60.9	71.3
새로운 경험	10.0	8.2	14.1	9.7
지식·기술을 습득	3.3	6.7	18.8	8.0
친척·친지 방문	16.7			4.1
본국에서 취업할 한층 더 나은 생활	6.7	3.8	6.3	3.3
특별한 목적이 없다	3.3	.5		1.1
무조건 본국을 떠나	1.1	1.0		.8
계 사례수	100.0 90	100.0 208	100.0 64	100.0 362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93.32495	14	.00000	

(나) 한국을 취업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취업이 용이하므로	2.2	28.6	28.3	21.9
한국인 친척·친지	47.2	11.4	17.0	21.3
한국에 친근감이	21.3	13.8	11.3	15.3
입국 사증을 발급	3.4	18.1	11.3	13.4
한국 체류 친지	11.2	13.8	11.3	12.8
임금 수준이 매우	9.0	6.7	9.4	7.7
입국 비용이 비교	2.2	6.7	5.7	5.4
미국·일본 진출기회	3.4	.5	3.8	1.7
체포 우려 없음		.5	1.9	.6
계 사례수	100.0 89	100.0 210	100.0 53	100.0 352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82.55360	16	.00000	

(다)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 획득 원천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언론 매체의 뉴스	34.4	33.3	37.7	34.4
한국 방문 경험자	31.1	21.4	1.6	20.4
올림픽·아시안게임	12.2	23.4	19.7	19.8
본국 진출 한국업체	4.4	4.2	18.0	6.7
상품 광고	1.1	7.3	8.2	5.8
영화, 텔레비전	5.6	5.7	3.3	5.2
한국산 상품	7.8	2.6	1.6	3.8
본국 정부의 홍보	1.1	.5	9.8	2.3
한국 정부의 홍보	2.2	1.6		1.5
계 사례수	100.0 90	100.0 192	100.0 61	100.0 343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63.79372	16	.00000	

(라) 본국에서 한국 취업 정보 획득 원천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친척·친지	45.8	34.7	29.8	36.7
직장 동료	21.7	25.8	45.6	28.2
이웃 사람	15.7	14.7	8.8	13.9
언론 매체	4.8	7.4	8.8	7.0
학교 친구	8.4	6.3	3.5	6.4
학교 선생님	2.4	6.3		4.2
교과서 이외의 책		4.2	3.5	3.0
학교 교과서	1.2	.5		.6
계 사례수	100.0 83	100.0 190	100.0 57	100.0 330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23.36991	14	.05451	

5.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 현황

기업규모: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인 반면,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평균 150명 정도인 중견·중소기업이다. 불법체류자 중에서는 중국 교포가 취업 중인 업체의 규모(44명)가 기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 중인 곳(28명)보다 훨씬 크다. 영세기업은 내국인 노동자를 유인할 만한 임금·고용안정성·노동조건·복지혜택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가급적 취업을 기피하는 곳으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그만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이 곳의 취업기회는 개방되어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영세기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표 12).

업종: 업종은 출신국별로 차이가 많은데, 중국 교포들의 경우 남자는 건설 노무

<표 12> 기업 규모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차이검정
본국인 수	5.19	3.56	15.77	5.99	F=46.8***
기타 외국인 수	1.10	2.83	2.11	2.45	F= 1.0
한국인 수	37.75	17.57	125.59	38.27	F=37.5***
전체 종업원 수	44.33	27.97	141.94	49.39	F=28.1***
사례수	40	198	48	286	

<표 13> 업종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농업 및 수렵업		3.0	3.4	2.5
임업		.5		.3
어업		.5		.3
금속 광업		5.0	1.7	3.4
기타 광업	4.8	1.0		1.5
음식료품 및 담배	6.3	3.5		3.4
섬유·의복 및 가방	1.6	19.3	16.9	15.4
목재 및 나무 제품	4.8	8.4	10.2	8.0
종이 및 종이 제품	1.6	5.0	3.4	4.0
화학물·석유·석	4.8	16.8	16.9	14.5
비금속 광물 제품		1.0		.6
제1차 금속 산업		11.9	3.4	8.0
조립 금속 제품	1.6	10.9	1.7	7.4
기타 제조업	7.9	8.4	13.6	9.3

(계속)

<표 13> 업종(계속)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전기·가스 및 증기	1.6	1.5	20.3	4.9
종합 건설업	30.2	.5		6.2
전문직별 건설업	11.1			2.2
도매업		1.0		.6
소매업	1.6	1.0		.9
음식·숙박업	15.9	1.0		3.7
사업 서비스업	1.6			.3
사회 서비스업	1.6		1.7	.6
개인 및 가사 서비스	1.6		6.8	1.5
국제 기구 및 기관	1.6			.3
사례수	100.0 63	100.0 202	100.0 59	100.0 324
Chi-Square Pearson	Value 251.09367	DF 46	Significance .00000	

<표 14> 업종별 산업기술 연수생 배정 계획, 1994년

업종(21개)	업체		연수생		업체당 연수생수
	N	%	N	%	
섬유제품 제조업	926	21.9	4,941	24.7	5.3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2	3.1	714	3.6	5.41
가죽·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03	2.4	658	3.3	6.3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9	1.2	198	1.0	4.0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6	2.7	489	2.4	4.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42	1.0	169	0.8	4.02
코크스·석유정제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	0.0	8	0.0	4.00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65	3.9	680	3.4	4.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60	13.3	2,185	10.9	3.9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8	1.8	367	1.8	4.71
제1차 금속산업	184	4.4	840	4.2	4.5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455	10.8	1,944	9.7	4.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6	8.0	1,447	7.2	4.31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2	0.3	57	0.3	4.7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20	5.2	985	4.9	4.48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6	5.4	1,289	6.4	5.70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8	1.8	333	1.7	4.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0	8.1	1,840	9.2	5.4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	0.9	158	0.8	4.05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55	3.7	691	3.5	4.46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	0.1	7	0.0	2.33
전체/계	4,221	100.0	20,000	100.0	4.74

주: 1993년 6월 말 현재 인력부족률 50% 이상인 제조업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 복제업을 제외한 21개 업종이다.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 연수 협력사업 운용요령』, 1994.

자로 여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봉제·의류·피혁 제조업이 가장 많고, 다음에 플라스틱, 가구·목재, 전자 부품, 화학, 가방 등의 제조업 순이다(표 13). 연수생의 취업 업종은 <표 14>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는 한국의 인력난이 심한 업종과 거의 일치한다.

직종: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까? 외국인노동자들은 흔히 "시다"(helper)라고 불리는 작업 보조로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나머지도 단순노동자 내지 단순기계조작공·단순조립공과 잡역부로 요약될 수 있다. 한 마디로 단순·미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 제품에 따라 작업과정이 세분되므로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직종으로 세분되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일은 특정한 숙련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15).

<표 15> 직종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농업 및 축산 종사		3.0	1.6	2.2
임업 종사자		.5		.3
광원		1.0		.6
금속 가공 처리공	1.6	5.5		3.7
목재 가공 종사자	6.3	4.5	4.9	4.9
화학물 가공공	1.6	2.0		1.5
방직공·제직공		1.0	6.6	1.9
가죽 처리공	1.6			.3
음식료품 가공 처	3.1	5.0	1.6	4.0
담배 제조공		1.0		.6
의복 제조공, 재봉		11.6	8.2	8.6
제화공, 가죽 제품		1.0		.6
가구 제조공	1.6	4.0	1.6	3.1
대장공, 공구		5.0		3.1
기계 설비공		3.5	1.6	2.5
전기 설비공	1.6	2.0	26.2	6.5
연관공·용접공·	1.6	4.0		2.8
장신구 및 귀금속		1.0		.6
유리 성형공, 도자기		1.0		.6
고무 및 플라스틱	3.1	12.6	11.5	10.5
종이 및 판지 제조		3.0	3.3	2.5
인쇄공	1.6	4.5		3.1
도장공		1.0		.6
벽돌공, 목공	31.3			6.2
고정 기관			1.6	.3
운전사	1.6			.3
단순 노무자	6.3	14.1	3.3	10.5

(계속)

<표 15> 직종(계속)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기타 생산·기능직	6.3	4.0	16.4	6.8
요리사, 식당 종업	23.4			4.6
가정부, 식모	4.7		6.6	2.2
기타 서비스직 총		.5	3.3	.9
사무직 종사자	1.6	.5		.6
외국어 학원 강사		1.0		.6
가수 및 무용수		1.0		.6
기타 전문·기술직	1.6	.5	1.6	.9
구직자		.5		.3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64	199	61	324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296.99341	70	.00000	

지역: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은 서울 근교 중소도시의 공단지역내 생산직이나 유흥업소, 공사장·건설현장, 농촌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낙도어장·해태양식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들이 취업하고 있는 공장 소재지도 서울 근교, 의정부, 안산, 안양, 부천, 성남, 구리, 김포, 남양주 등 수도권지역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부산 등으로 전국에 분산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는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 예컨대 면목동·신내동·중곡동·장안동·성수동·송정동·망우동 등을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 퍼져 있다. 경기도 시 지역에서는 부천·인천·성남·구리 등에, 군 지역에서는 파주·용인·광주·고양·남양주 등에 걸쳐 고루 분산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충남·전북·경남의 농촌에까지 진출한 사례도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재는 인력난이 존재하는 곳이면, 다시 말해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로든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외국인노동자의 직장 생활

노동시장 조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산업기술 연수생과 같은 시간 동안 일하고 두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다(표 16). 이러한 격차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일치한다(표 17). 수입 규모는 소비규

모와 본국으로의 송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역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기도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직장선택을 자유를 누리면서 산업기술 연수생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은 최초의 연수 사업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즉 노동시간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월평균 임금에서 커다란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산업기술 연수생의 연수사업체 이탈 및 불법체류의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 중에서는 중국 교포가 기타 외국인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월 급여는 기본급이 미화 210~260달러로 계약되어 있고(표 18), 초과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내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 수준의 절반 정도이나, 자국의 임금 수준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다. 반면,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수준은 상시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의 성격을 반영하여 시장임금에 꽤 근접하고 있다.1)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1992년에 30만원 정도이던 것이 1993년에는 50만원대로, 1994년에는 60만원대로 상승하였다. 불법체류자가 산업연수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표 16> 노동시장 조건

(단위: 시간, 원)

구분	하루 노동시간	하루 여가시간	월평균수입	월평균소비	월평균송금	
체류자	불법체류자(N=325)	11.0	3.6	628,969	196,191	322,398
	산업연수생(N=68)	10.6	4.1	310,043	87,705	121,082
	평균차이 검정(F값)	2.1	0.7	134.7***	36.4***	55.0***
민족·체류	교포불법체류자(N=104)	10.9	4.6	829,608	241,611	219,444
	기타불법체류자(N=221)	11.0	3.3	574,829	182,861	343,577
	산업기술연수생(N=68)	10.6	4.7	310,043	87,705	121,082
평균차이 검정(F값)	1.1	2.2	160.3***	25.8***	37.5***	
출신국가	중국 교포(N=105)	10.9	3.5	829,608	241,611	219,444
	필리핀(N=84)	10.5	4.2	483,404	150,317	297,246
	방글라데시·파키스탄(N=51)	11.6	5.2	532,240	174,255	325,077
	네팔(N=112)	10.8	4.4	560,566	176,765	333,256
	기타(N=37)	11.0	1.9	452,258	128,250	168,971
평균차이 검정(F값)	3.3*	4.0**	38.3***	7.4*	6.9***	

* p<.05 ** p<.01 *** p<.001

1) 물론 그들이 취업한 3D업종 자체가 저임업종이므로 국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보다는 낮다.

<표 17> 남자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의 고용비용 비교, 1993년 10월

(단위: 개, 시간, 원)

구분	고용 기업 수	주당 노동시간	평균 임금	추가비용	총 고용비용
산업연수생	31	54.8	345,000	141,500	486,500
불법체류자	21	56.2	419,300	120,900	540,200

자료: 산업연구원, 1994.

<표 18> 출신 국가별 산업기술 연수 수당, 1994년

(단위: 달러)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파키스탄·베트남	스리랑카·네팔	방글라데시
260	250	230	210	200

자료: 노동부, 1994.

<표 19> 노동만족도·생활만족도

만족도	구분	출신 국가					체류자격		
		중국 교포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기타	중국 교포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현재의 일		0.69	0.86	0.98	0.78	0.29	0.69	0.89	0.27
생활 전반		0.60	1.13	1.13	1.16	0.42	0.60	1.26	0.59
조사대상자 수(N)		105	84	51	112	37	104	221	68
평균차이검정(F)		일 F=1.15; 생활 F=1.85					일 F=4.04; 생활 F=8.91***		

* p<.05 ** p<.01 *** p<.001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에 3점, "만족한다"에 2점,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에 1점,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에 0점, "다소 불만인 편이다"에 -1점, "불만이다"에 -2점, "매우 불만이다"에 -3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삶의 질: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출신국별 차이 없이, 외국인노동자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들의 한국에서의 일과 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그러나 체류자격별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연수생보다는 불법체류자가, 교포들보다는 기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노동과 일에 대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다. 연수생과 교포 집단의 불만이 큰 것은 각각 불법체류자와 내국인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노동자들의 만족도는 자신들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따라 상이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충: <표 20>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체불 임금, 한국인과의 차별, 육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열악한 작업조건,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직업병, 산업재해 등이 주로 지적된다.

<표 20> 직장생활 문제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장시간 노동	19.6	55.5	43.9	47.4
저임금	2.0	8.5	35.1	12.3
체불 임금	25.5	8.5	5.3	10.7
한국인과의 차별	21.6	1.5	1.8	4.9
욕설이나 모욕	7.8	4.5	1.8	4.5
열악한 작업 조건	2.0	6.0	1.8	4.5
한국인 노동자와	3.9	5.5		4.2
직업병		4.0	1.8	2.9
산업 재해	7.8	1.0		1.9
한국인 직장 상사	3.9	2.0		1.9
기타	2.0	1.0	3.5	1.6
사장과 의 갈등		.5	3.5	1.0
육체적 폭력: 성폭력		1.0		.6
육체적 폭력: 괴롭히기	2.0			.3
육체적 폭력: 구타		.5		.3
여러 가지 임금공제	2.0			.3
육체적 폭력: 뺨때리기			1.8	.3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1	200	57	308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136.31373	32	.00000	

<표 21> 직장 생활 문제 해결 방법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다른 곳으로 이직	29.8	34.7	21.2	31.4
사장에게 이야기	10.5	31.1	36.5	28.1
참고 견딘다	52.6	14.2	23.1	23.1
노동조합에 도움요청	7.0	13.2	13.5	12.0
기타		6.8	5.8	5.4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7	190	52	299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44.01038	8	.00000	

체류자격별로 고충의 유형이 상이한데, 중국 교포 불법체류자는 체불 임금(25.5%), 한국인과의 차별(21.6%), 장시간 노동(19.6%)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장시간 노동(55.5%), 체불임금(8.5%), 저임금(8.5%)의 순으로 반응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은 장시간 노동(43.9%), 저임금(35.3%), 체불임금(5.3%)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충 해결방식: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외국인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31.4%), “사장에게 해결을 호소하기도 하고”(28.1%), “그냥 참고 견딘다”(23.1%). 이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 해결방식은 주로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노조에 도움을 요청”(12.0%)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21). 체류자격별로 고충 처리 유형이 상이한데, 중국 교포 불법체류자는 “참고 견딘다”(52.6%)와 “다른 곳으로 옮긴다”(29.8%)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34.7%)와 “사장에게 이야기한다”(31.1%)는 비율이 높으며, 산업기술연수생은 “사장에게 이야기한다”(36.5%)와 “참고 견딘다”(23.1%)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60.0%)을 꼽고 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확충”(10.0%)과 “지방 관서에 상담소 또는 민원 센터의 설치”(10.0%)가 필요하다고 보며,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9.5)도 중요한 방안으로 지적한다(표 22).

<표 22> 생활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산업재해보상보험	56.8	62.5	54.0	60.0
의료 서비스	20.5	6.8	12.0	10.0
지방관서에 상담	2.3	11.9	10.0	10.0
노조가입 허용	9.1	9.7	4.0	8.5
구직 기회에 대한	2.3	3.4	10.0	4.4
공무원의 서비스		2.8	8.0	3.3
한국인 친구와 만	4.5	2.8	2.0	3.0
주거·주택 정보	4.5			.7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44	176	50	270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32.15161	14	.00381	

주거: <표 23>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은 회사 기숙사(55.6%)나 셋 방(18.5%)에 주로 거주한다. 체류자격별로 그들의 숙소는 확연히 구분되는데, 중국 교포는 셋방(33.9%)이나 셋집(14.3%), 또는 작업장·공장(21.4%)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 연수생은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단연 높다(각각 64.0%, 68.3%).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략 폭 3.23m 길이 4.16m (14.25m²) 정도의 면적의 방에 평균 3.94명이 거주한다(표 24). 이러한 거주지 규모는 집단별로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방에 4명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표 23> 숙소의 형태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회사 기숙사	12.5	64.0	68.3	55.6
셋 방	33.9	16.8	10.0	18.5
작업장·공장	21.4	7.1	3.3	8.9
셋 집	14.3	1.5	6.7	4.8
개인 숙박업	7.1	3.6	1.7	3.8
기타 기숙사	1.8	3.6	6.7	3.8
기타	3.6	1.5	3.3	2.2
친구·친척 집	5.4	2.0		2.2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6	197	60	313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70.09386	14	.00000

<표 24> 숙소의 크기

(단위: m², 명)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차이검정
방의 면적	14.70	14.55	12.16	14.25	F= 0.7
한 방 거주자 수	3.15	3.95	4.62	3.94	F= 2.8
사례수	47	169	50	266	

외국인노동자들의 숙소에는 어떤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는가를 <표 25>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숙소에는 텔레비전(71.1%)이 가장 많이 갖추어져 있고, 다음이 난방시설(64.6%), 샤워·목욕시설(56.8%), 냉장고(50.6%) 등의 순으로 비치되어 있다.

친구: 외국인노동자들은 국내에 비교적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친구의 국적별로는 본국인이 가장 많고(14.32명), 다음이 한국인(7.47명)과 기타 외국인노동자(4.93명)의 순이다. 본국인 친구는 중국 교포 집단을 제외한 외국인 집단에서 15~16명 정도에 이르고, 기타 외국인 친구는 중국 교포 집단이 0.58명으로 가장 적다. 중국 교포를 제외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친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6.29명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인 친구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8.03명), 산업기술 연수생(7.20명) 및 중국 교포 불법체류자(5.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숙소의 설비 비치율

(단위: %)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독립성 검정
텔레비전	70.5	76.9	53.2	71.1	$\chi^2=12.9^{**}$
난방시설	49.2	62.3	87.1	64.6	$\chi^2=20.5^{***}$
샤워·목욕 시설	29.5	58.3	79.0	56.8	$\chi^2=31.2^{***}$
냉장고	39.3	51.3	59.7	50.6	$\chi^2= 5.2$
라디오·녹음기	27.9	41.7	48.4	40.4	$\chi^2= 5.8$
가스렌지	29.5	44.2	29.0	38.5	$\chi^2= 7.2^*$
난로	6.6	37.2	41.9	32.3	$\chi^2=23.3^{***}$
전화	41.0	23.1	37.1	29.2	$\chi^2= 9.5^{**}$
세탁기	11.5	31.2	37.1	28.6	$\chi^2=11.6^{**}$
전용 부엌	21.3	30.7	24.2	27.6	$\chi^2= 2.5$
비디오	11.5	16.1	6.5	13.4	$\chi^2= 4.0$
전축·오디오	1.6	15.6	9.7	11.8	$\chi^2= 9.0^*$
사례수	61	199	62	322	

<표 26> 한국내 친구 수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차이 검정
본국인	8.13	15.40	16.53	14.32	F= 4.8**
기타 외국인	0.58	6.29	3.81	4.93	F= 8.6***
한국인	5.51	8.03	7.20	7.47	F= 1.3
전체	13.28	27.24	25.68	24.65	F= 8.2***
사례수	47	186	50	283	

여가 활용: 외국인노동자들이 평일과 휴일에 여가를 활용하는 유형이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TV를 보거나 잠자고, 목욕하고, 음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놀러 가는 등으로 그들의 여가를 보낸다. 평일과 휴일의 차이를 분석하면, 평일에는 주로 정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 휴일에는 그나마 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7> 평일과 휴일의 여가 활용

(단위: %, N=325)

평일의 일과 후 여가 활용		일요일·휴일의 여가 활용	
72.0	㉠ 텔레비전을 본다 ▲	60.7	㉠ 텔레비전을 본다 ▼
63.7	㉡ 잠잔다 ▲	57.6	㉡ 친구에게 놀러 간다 ▲
55.7	㉢ 목욕한다 ▲	53.9	㉢ 목욕한다 ▼
50.8	㉣ 음악을 듣는다 ▲	52.6	㉣ 잠잔다 ▼
44.3	㉤ 친구에게 놀러 간다 ▼	46.1	㉥ 교회·이슬람사원·절에 간다 ▲
40.0	㉦ 신문을 읽는다 ▲	43.6	㉦ 음악을 듣는다 ▼
37.5	㉧ 한국 노래를 배운다 ▲	43.0	㉦ 쇼평을 한다 ▲
36.3	㉨ 교회·이슬람사원·절에 간다 ▼	36.1	㉦ 신문을 읽는다 ▼
33.8	㉩ 쇼평을 한다 ▼	34.9	㉧ 한국 노래를 배운다 ▼
26.2	㉪ 산책한다 ▼	30.8	㉨ 비디오를 본다 ▲
24.6	㉫ 비디오를 본다 ▼	29.6	㉫ 산책한다 ▲
23.4	㉬ 술을 마신다 ▼	28.0	㉬ 관광한다 ▲
22.8	㉭ 운동을 한다 ▼	26.5	㉭ 술을 마신다 ▲
20.6	㉮ 관광한다 ▼	24.0	㉭ 운동을 한다 ▲
17.2	㉯ 놀이공원에 간다 ▼	23.1	㉯ 놀이공원에 간다 ▲
16.6	㉳ 노래방에서 노래한다 ▼	20.9	㉳ 노래방에서 노래한다 ▲
16.6	㉲ 영화 보러 간다 ▼	18.4	㉲ 영화 보러 간다 ▲
12.6	㉰ 전자 오락을 한다 ≡	15.6	㉰ 여행한다 ▲
12.6	㉱ 기타 ▼	13.8	㉱ 기타 ▲
11.1	㉴ 여행한다 ▼	12.5	㉰ 전자 오락을 한다 ≡
8.0	㉴ 근교를 드라이브한다 ▼	11.5	㉴ 근교를 드라이브한다 ▲
7.1	㉵ 테이트한다 ▼	9.7	㉵ 도박을 한다 ▲
6.8	㉵ 도박을 한다 ▼	9.0	㉵ 테이트한다 ▲

▲ 우월 ▼ 열등 ≡ 유사

7. 맺음말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한국에 온 연수생이 불법체류자보다 훨씬 열등한 조건에 처하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더구나 인력송출업체의 비리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충: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1.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7.2	11.4	13.3	12.5
아니다	41.4	41.5	31.7	39.2
모르겠다	41.4	47.2	55.0	48.3
계 사례수	100.0 29	100.0 176	100.0 60	100.0 265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2.76680	4	.59758	

2. 귀하는 현 직장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4.3	2.3	5.1	4.3
아니다	60.7	84.2	94.9	84.1
모르겠다	25.0	13.5		11.6
계 사례수	100.0 28	100.0 171	100.0 59	100.0 258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22.47104	4	.00016	

3. 귀하는 본국에서 노동조합원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50.0	28.5	17.5	28.7
아니다	43.8	62.8	82.5	64.8
모르겠다	6.3	8.7		6.5
계 사례수	100.0 32	100.0 172	100.0 57	100.0 261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17.56774	4	.00150	

4. 귀하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2.0	8.1	9.3	8.7
아니다	76.0	82.1	88.9	82.9
모르겠다	12.0	9.8	1.9	8.3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5	173	54	252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4.38353	4	.35658	

5. 귀하는 한국에서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5.4	7.1	9.6	8.5
아니다	65.4	81.0	86.5	80.5
모르겠다	19.2	11.9	3.8	11.0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6	168	52	246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7.01402	4	.13515	

6.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5.4	19.3	21.4	19.4
아니다	42.3	63.9	60.7	60.9
모르겠다	42.3	16.9	17.9	19.8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6	166	56	248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9.54690	4	.04879	

7.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은 귀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그렇다	17.2	8.2	2.0	8.0
아니다	27.6	34.2	51.0	37.0
모르겠다	55.2	57.6	47.1	55.0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9	158	51	238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9.95166	4	.04125	

8. (만약 귀하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면) 귀하는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불법 체류자이기	93.6	82.4	5.5	69.6
산업기술 연수생	2.1	3.7	69.1	15.9
우리 회사 사장이		3.7	1.8	2.8
나에게 아무런 도		1.6	5.5	2.1
노동조합 자체에		3.7	10.9	4.5
기타	4.3	4.8	7.3	5.2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47	187	55	289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175.82504	10	.00000	

9. 어떤 사람이 귀하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기꺼이 노동조합	47.8	36.4	20.0	35.3
외국인으로서 노	15.2	20.2	26.0	20.4
노동조합에 관심	6.5	3.5	4.0	4.1
노동조합 자체에		1.2	16.0	3.7
외국인 노동자를	10.9			1.9
사태를 기다리며	19.6	38.7	34.0	34.6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46	173	50	269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60.78069	10	.00000	

10.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노동조합이 어떤 이유로 파업을 감행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절대로 동참 않은 나와 관련될 때만	36.2	23.8	40.0	29.0
노조가 옳을 때 어떤 재점이라도 모르겠다	12.8	18.0	16.0	16.7
	12.8	11.0	4.0	10.0
	2.1	1.7	6.0	2.6
	36.2	45.3	34.0	41.6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47	172	50	269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11.82165	8	.15934	

11. 귀하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구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매우 많이 안다	6.7	6.5	3.3	6.0
다소 아는 편이다	35.0	8.5	3.3	12.5
다소 모르는 편이	21.7	24.1	28.3	24.5
거의 모른다	36.7	60.8	65.0	57.1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60	199	60	319
Chi-Square	Value	DF	Significance	
Pearson	37.67917	6	.00000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종구(성공회대학교 종교사회학과 교수)

(1) 현황

- 1993년 현재 전체 외국인취로자 70만명, 이 가운데 불법취로자의 규모는 약 30만명 규모로 추산¹⁾,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1990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로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미숙련노동력의 도입을 금지하는 방침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적 기술이나 기능의 보유자」이다. 통역·번역을 포함해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업무·인문지식」의 분야에서는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의 총액이 연간 300만円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 불법잔류자의 국적을 보면 태국, 한국,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이란, 페루, 방그라데시, 파키스탄, 타이완, 미얀마, 등으로 구성

- 불법잔류자는 1992년 6월까지 월 평균 1만명의 속도로 증가, 불황으로 증가율 감소, 1994년에는 월 평균 1천명의 증가 추세, 1992년 1년간 67,824명 강제 퇴거 (전년 대비 90% 증가), 이 가운데 63,265명이 불법잔류자,

- 1992년 4월 이후 이란과의 사증 면제 협정 정지,

- 日系 이민 역류 장려,

「1990년 6월 入管法 개정; 日系 2,3세에게는 취로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1991년 7만명, 1992년 15만명으로 증가,

- 東京商工會議所 조사(1993.5), 「752 회원사 응답」, 「약 40% 외국인고용에 전향적」,

「외국인 고용업종: 제조업 53%, 상업·서비스업 21%, 건설업 19%」,

1) 手塚和彰, 「外國人労働者の使い捨て雇用は日本を世界の孤兒にする」, 『日本の論點 1994』, 文藝春秋

“외국인 고용직종: 단순작업원 36%, 생산공·기능공 25%, 기술직·전문직 32%”

“급여 월 20만-30만円”, “이유: ‘일본인의 채용 곤란 약 50%’, ‘저임금 3.7%’”

- 사회적 마찰화 경향 =

「결혼과 무국적아」 = “법무성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세 이하의 「무국적아」가 이미 1990년말에도 74명에 달하고 있었다. 1993년 2월에 東京지방재판소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일본국적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イミダズ 1995: 513)”,

「1993년 4월 東京요요기공원에서 이란인 추방」, 「불황과 인력과잉 현상, 외국인의 재취직 기회 회소화」

- 우익의 적대행위 등장

(2) 배경

-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円高, 노동집약적 공정의 해외 저임지역 이동과 동남아의 사회분화 가속화,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노동력의 대량 발생,

- 서비스, 토목 건축, 주물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같은 해외이전 불능 산업 부문의 노동력 충원 문제,

- 인구의 고령화와 신규입직자의 구인난,

(3) 정책

- 법무성 = 단순노동자 원칙 불허, 就學生 자격으로 시간제노동허가 (주20시간), 연수생자격으로 도입허가,

- 기능실습제도 실시(1993), 「국제연수협력기구(노동성, 의무성)」 주관, 2년간 4만명 규모, 노동법 적용대상으로 규정,

- 노동성 = 「勞災保險」, 「勞働基準監督」의 대상으로 취급, 법무성에 불법취업자 통보 안함,

= 1991.8 「日系人雇用서비스센터」 설치, = 취업경로 확보, 노동상담

- 東京都 = 「외국인상담센터」 「노동사무소」 「노동경제국 노동부」에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상담서비스 제공,

- 川崎市 = 근로시민실에서 상담서비스 제공, 「자격외취로자」 호칭,

- 神奈川県 = 94년부터 구급의료비 미불금을 자치체가 부담, (미불건 = 91년, 314건, 3677만円, 縣의사회 조사) = 「縣노동센터」 「9개 지역 노동센터」에서 상담서비스제공

- 群馬縣 = 94년 예산에 1,000만円편성, 기업과 공동으로 의료기금창설 준비, (연간 2,000만円 의료비 미불)

- 후생성 = 入管法 개정을 내세워 91.11부터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의료비 지급을 불법취업자에 대해 중지하는 결정,

(4) 운동

- 주류 노동운동의 무관심과 방치

- 「지역단위 노조」, 「종교단체」, 「시민운동」의 지원

- 「카라바오」 = 시민의 자원봉사, 상담

- 神奈川県시티유니온의 사례 (한국인 중심) (全造船 소속) 상담자 = 회비납부 조합가입 = 조합으로서 권익 보호활동

- 국제적 연대의 형성 지향

「프라이트」= 외국인노동자 중심 의료공제회, 의료비 70% 지급, 회비와 외국인고용기업의 기부금, 법인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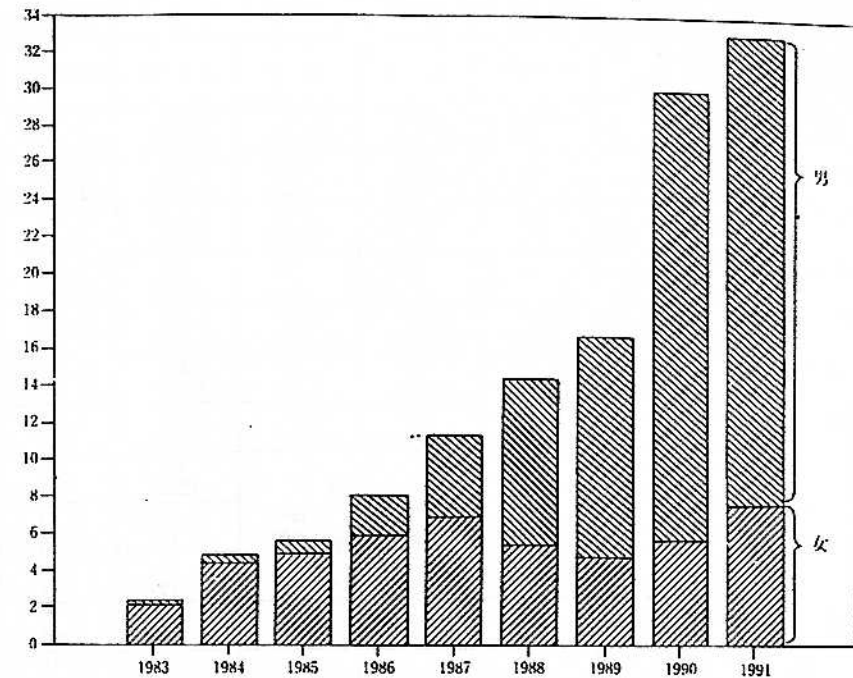
「아시아의사연락협의회」, 국제의료정보센터 = 1992 발족, 93.4 부터 7개국어 응급환자 전화통역 서비스 제공,

(5) 전망과 논점

- 단일민족 사회의 신화를 넘어 외국인과의 공존할 수 있는 가치관의 확립,
- 円高 = 산업구조 재편성 = 일본인 주변부 노동자와 외국인의 경합 가능성,
- 이미 유입된 외국인노동력의 배출 불능, 사실상의 노동개국 진행,

(千人)

第1図 摘発された不法就労者数



(出所) 法務省入管統計

後藤純一, 「外国人労働者受けへれの経済学的影響」, 『季刊労働法』, 1992, No. 30.

第2表 不法就労者の出身国別割合

(%)

	1987	1988	1989	1990	1991
(男女計)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韓国	1.84	7.22	18.84	18.52	29.73
イラン	0.00	0.00	0.09	2.18	23.40
マレーシア	0.16	1.95	11.23	14.94	14.75
タイ	9.44	9.70	6.89	4.85	9.87
フィリピン	70.99	37.63	22.52	13.53	9.06
中国(台湾を含む)	4.37	3.51	3.54	3.82	5.06
パキスタン	8.00	17.44	19.09	13.00	2.41
Bangladesh	3.87	20.55	13.71	19.83	0.89
その他	1.33	2.01	4.09	9.33	4.82
(男子)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韓国	2.54	8.61	18.73	18.27	32.67
イラン	0.00	0.00	0.11	2.68	30.02
マレーシア	0.35	2.97	14.34	15.95	15.35
タイ	6.76	4.13	3.13	2.73	3.65
フィリピン	52.53	18.90	10.93	6.59	4.26
中国(台湾を含む)	4.90	2.58	2.68	3.30	4.90
パキスタン	21.10	27.94	26.87	16.05	3.13
Bangladesh	10.19	32.92	19.29	24.47	1.15
その他	1.63	1.94	3.91	9.96	4.86
(女子)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韓国	1.41	4.90	19.10	19.57	19.83
イラン	0.00	0.00	0.04	0.07	1.18
マレーシア	0.04	0.26	3.61	10.67	12.74
タイ	11.07	18.92	16.09	13.82	30.74
フィリピン	82.27	68.67	50.88	42.90	25.19
中国(台湾を含む)	4.05	5.05	5.64	6.01	5.60
パキスタン	0.00	0.04	0.04	0.11	0.00
Bangladesh	0.01	0.06	0.04	0.18	0.01
その他	1.14	2.10	4.54	6.68	4.71

上同 p.32.

(出所) 法務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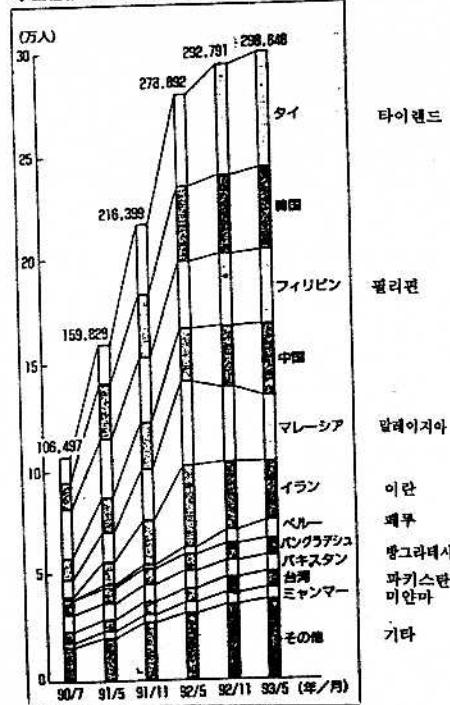
第1表 資格外活動及び資格外活動関連不法残留事件の推移

年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国籍・出身地		昭和60年	61年	62年	63年	平成元年	2年
총	数	5,629 (687)	8,131 (2,186)	11,307 (4,289)	14,314 (8,929)	16,608 (11,791)	29,884 (24,176)
방그라테시	バングラデシュ	1 (1)	58 (58)	438 (437)	2,942 (2,939)	2,277 (2,275)	5,925 (5,915)
總	国	76 (35)	119 (69)	208 (109)	1,033 (769)	3,129 (2,209)	5,534 (4,417)
말레이시아	マレーシア	-	-	18 (15)	279 (265)	1,865 (1,691)	4,465 (3,856)
필리핀	フィリピン	3,927 (349)	6,297 (1,500)	8,027 (2,253)	5,386 (1,688)	3,740 (1,289)	4,042 (1,593)
파키스탄	パキスタン	36 (36)	196 (196)	905 (905)	2,497 (2,495)	3,170 (3,168)	3,886 (3,880)
타이랜드	タイ	1,073 (120)	990 (164)	1,067 (290)	1,388 (369)	1,144 (369)	1,450 (661)
中	台湾				492 (223)	531 (275)	639 (351)
	中国	427 (126)	356 (161)	494 (210)	7 (5)	39 (26)	481 (428)
	香港				3 (2)	18 (15)	22 (20)
스리랑카	スリランカ	-	-	-	20 (20)	90 (87)	831 (821)
이란	イラン	-	-	-	-	15 (13)	652 (648)
네팔	ネパール	-	-	-	-	28 (26)	403 (392)
인도	インド	-	-	-	78 (78)	179 (178)	402 (396)
기타	その他	89 (20)	115 (38)	150 (70)	189 (76)	383 (170)	1,152 (798)

(注) ()内は、男性を示し、内数である。
一の数はその他に含まれ、未集計である。

後藤勝喜, 「外国人労働者と労働関係法規の適用」, 総合労働研究所 『季刊 労働法』, 1992, No. 164,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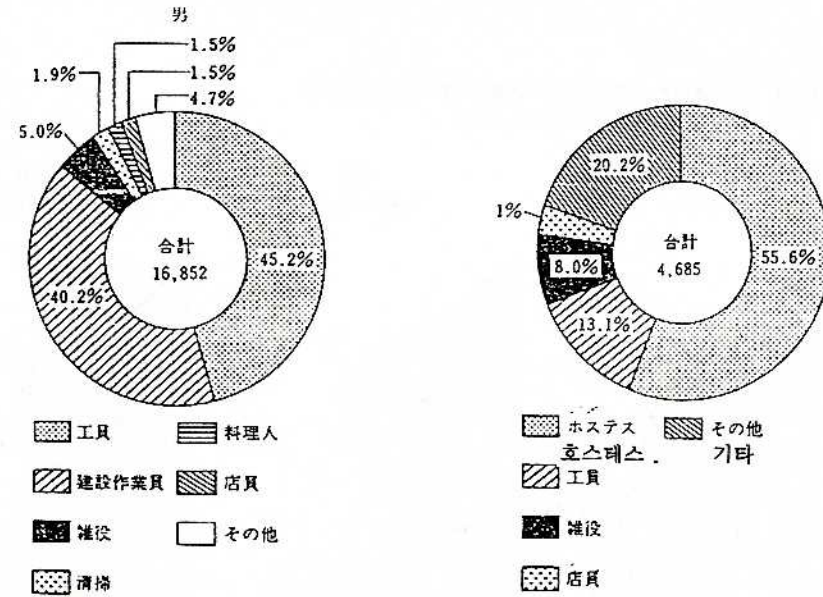
◆国籍(出身地)別不法残留者数の推移



手塚和彰, 「外国人労働者の使い捨て雇用は日本と世界の孤児に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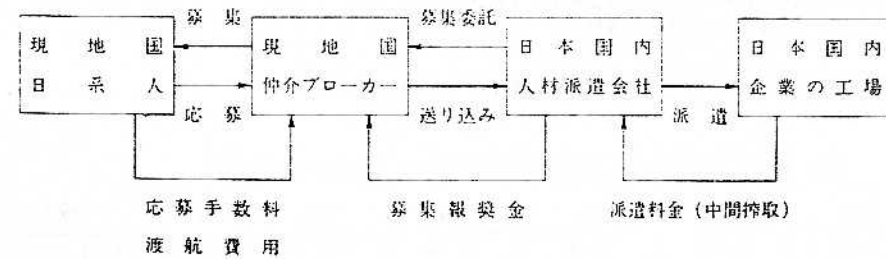
『日本と論点』, 1994, 文藝春秋

第2図 摘発された不法就労者の稼働内容



(注) 不法就労者中の稼働内容が確認された21,537人についての状況
(出所) 労務者統計

図1 ブローカー依存による募集、採用活動のフローチャート



吉光光顯, 「日本人のめが國のあける就労の現状と対策」, 『季刊 労働法』, 1992, No. 164, p.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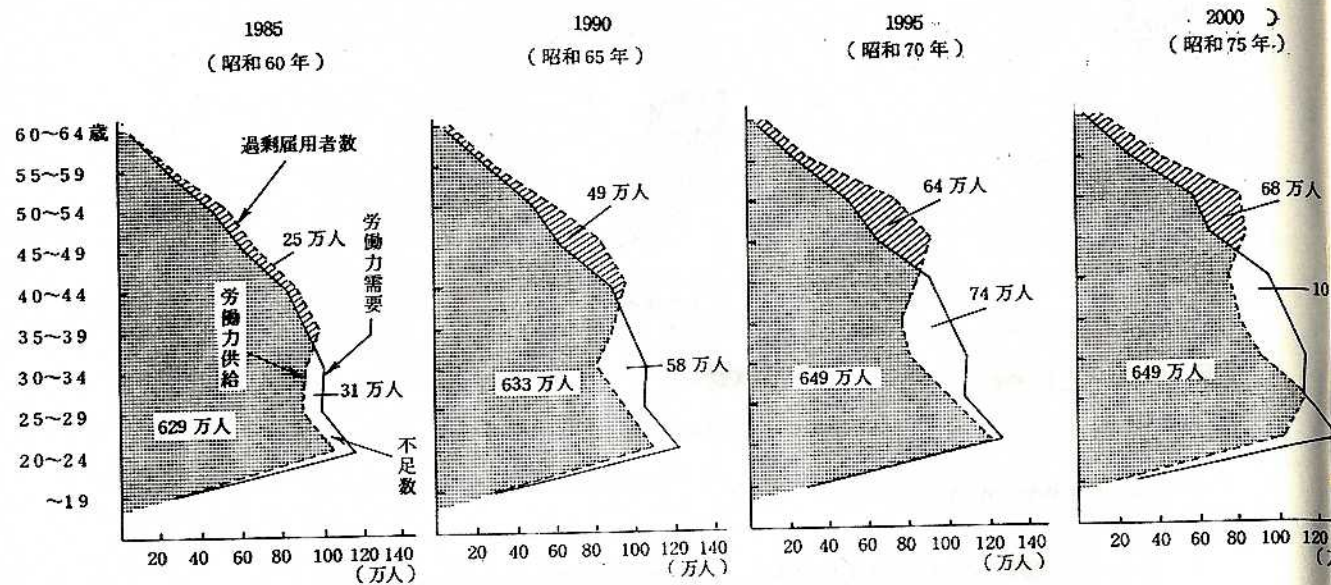
第1表 南米日系人の出稼ぎの現状(1991年6月)

	出稼ぎ数(人)	割合(%)
計	約 148,700	100.0
ブラジル	約 120,000	80.7
ペルー	約 18,000	12.1
アルゼンチン	約 8,500	5.7
ボリビア	約 1,500	1.0
パラグアイ	約 700	0.5

(出所) 労働者 『1991年海外労働情勢』 p. 520

後藤純一, ibid., p.31.

第16図 大企業における労働者の年齢別過不足状況の推移
(企業規模 1,000人以上)



(備考) 東京商工会議所「労働力の過不足状況に関する調査」(62年2月)及び「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により「労働省産業労働調査課推計」

労働法令協会、「産業・労働力構造の変化とこけからの人事・労働管理」, 1990, p.158.)

表1 規模別人手不足の状況(「過剰」とする企業の割合-「不足」とする企業の割合)

調査時 規模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60年				61年				62年				63年				元年				2年		3年			
	2月	5月	8月	11月	2月	5月	8月	11月	2月	5月	8月	11月	2月	5月	8月	11月	2月	5月	8月	11月	2月	5月	8月	11月	3月	6月まで
規模計	▲3	1	2	1	2	8	10	9	10	12	8	▲2	▲6	▲7	▲11	▲18	▲23	▲22	▲27	▲35	▲40	▲37	▲41	▲46	▲46	▲46
大企業	6	9	8	10	9	12	14	16	17	17	14	6	3	2	▲2	▲9	▲15	▲14	▲20	▲26	▲31	▲28	▲32	▲37	▲40	▲36
中堅企業	▲3	2	3	0	1	8	9	9	10	12	8	0	▲4	▲7	▲12	▲19	▲24	▲22	▲28	▲38	▲43	▲39	▲43	▲49	▲50	▲49
中小企業	▲6	▲1	▲1	▲3	0	6	8	7	8	10	5	▲6	▲10	▲10	▲14	▲21	▲24	▲25	▲29	▲37	▲42	▲38	▲43	▲47	▲47	▲48

出所：日本銀行「企業短期経済観測調査」(全国企業雇用人員判断調査)平成3年3月。
注：規模区分は以下のとおり。

	大企業	中堅企業	中小企業
製造業	1,000人以上	999~300人	299~50人
卸売	"	999~100	99~20
小売サービス	"	999~50	49~20
その他非製造業	"	999~300	299~50

吉川薫,「労働力不足下の労使関係」,『日本労働研究雑誌』,1991. 6. No. 379. p.23.